

의안번호	제 378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 월 일 (제 314 회)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2년 8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78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년 8월 3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5조)
 - (당초)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(변경)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
-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마련(안 제9조)
 -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5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2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2호, 3호, 4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7호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제1호 중 “제2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, 제2항 중 “매 회계 연도 마다”를 “회계 연도 마다”로 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</p> <p>-----제25조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조(기금조성) 충청북도 환경보전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</p> <p>2.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</p> <p>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</p> <p>4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생태 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</p> <p>5.~6.(생략)</p> <p>7. 기타 수입금</p>	<p>제2조(기금조성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(생략)</p> <p>2.-----따른-----</p> <p>-----</p> <p>3.-----따른-----</p> <p>-----</p> <p>4.-----따른-----</p> <p>-----</p> <p>5.~6.(생략)</p> <p>7. 그 밖의-----</p>
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</p>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제7조에 따라 -----</p>

<p>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<u>1이상</u>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8조(기금운용계획 · 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<u>매 회계 연도마다</u>----- -----. -----.</p> 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<u>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</u> <u>매 회계 연도마다</u> <u>도의회에 제출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</u>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----- ----- 1 <u>이상</u> -----.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기금운용계획 · 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<u>회계 연도마다</u>----- -----. -----.</p> 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<u>회계 연도마다</u>----- -----.</p> <p>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10조(시행규칙)-----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
--	---

관련 법령 발췌

□ 환경정책기본법('90. 8. 1제정)

제37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4.5>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'05. 8. 4제정)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('05. 12. 28제정)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